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장애여성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과제책임자 전기택 연구위원 (Tel:02-3156-7178 / e-mail:junkt@kwdimail.re.kr)

장애인 여성 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여성 고용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장애여성근로자 수당 지급 필요

초 록

- 장애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필수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의 고용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게 나타남.
- 실업 장애여성의 취업 촉진과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장애여성 고용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여성근로자 수당 지급과 의료급여의 지급 중지 유예를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장애여성 고용 촉진, 장애여성 전용 직업훈련시설 설립 등 장애여성 친화적 직업훈련환경 조성, 장애여성 일자리지원 특화기관 운영 및 네트워크 확대, 장애여성 취업가능 직종 확대, 선택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형태 확대, 취업전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제안함.



I. 배경 및 문제점(당면과제 중심으로 작성)

- ❖ 장애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필수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의 고용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2016년 현재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0.8%로 전체 장애여성 5명 가운데 약 1명만이 취업 상태에 있음. 또한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50.8%로 장애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장애여성의 실업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여성 실업자의 특성, 취업 등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촉진 및 장애여성 고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 장애여성의 실업현황

- ▶ 공식적인 실업률 통계와 더불어 공식 통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확장된 의미의 실업률 지표(고용보조지표3)를 적용하여 장애여성의 실업현황과 경제활동상태별 특징,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 등을 분석하였음.
- ▶ 공식 실업률 지표로는 장애인의 실업률이 6.5%, 전체 인구의 실업률이 3.7%이고 성별 격차는 미미하였음. 그러나 고용보조지표3으로 실업률을 산출한 결과 장애 인구는 18.7%, 전체 인구는 10.8%로 공식실업률 지표와 비교할 때 약 3배 정도 높고, 성별로도 큰 격차를 보임(남성 17.9%, 여성 21.3%).
- 취업에 대한 욕구에 비해 일시적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구직을 포기한 구성원이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이, 장애남성보다는 장애여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지표〉

(단위: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보조지표3
장애인구	전체	38.5%	6.5%	18.7%
	남성	50.3%	6.4%	17.9%
	여성	22.4%	6.8%	21.3%
전체인구	전체	63.3%	3.7%	10.8%
	남성	74.3%	3.8%	10.1%
	여성	52.7%	3.5%	1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6.5

주: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주기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100

-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 ▶ 고용보조지표3에 의한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결과

- 남성 대비 여성은 취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 확률이, 실업자보다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전체집단 및 남녀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경우 경제활동보다는 비경제활동에, 취업 보다는 실업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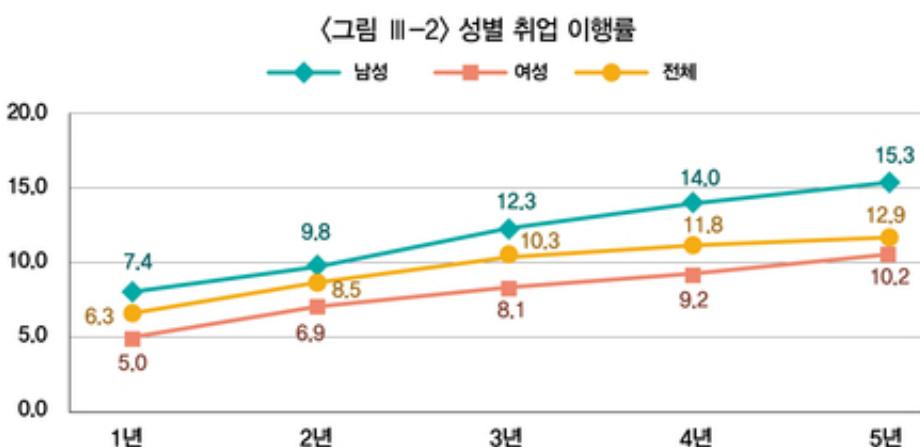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다항로짓 분석결과〉

독립변수	총속변수 : 취업자(1), 실업자(2), 비경제활동인구(3)								
	전체			남성			여성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
비경활	비경활	실업자	비경활	비경활	실업자	비경활	비경활	비경활	실업자
상수	2,566+	1,520+	1,046+	3,031+	2,011+	1,020	1,052**	0,353	0,698
성별(여성:1)	-0,928+	-0,612+	-0,316+						
연령	-0,073+	-0,057+	-0,016+	-0,085+	-0,064+	-0,021+	-0,060+	-0,050+	-0,009
혼인상태(유배우 기준)									
미혼	-0,384+	-0,308*	-0,076	-0,615+	-0,445*	-0,170	0,028	-0,057	0,084
사별/이혼/별거 등	0,215**	0,182	0,033	0,030	0,179	-0,148	0,252*	0,146	0,106
학력(고졸 기준)									
중졸이하	-0,280+	-0,639+	0,360+	-0,369+	-0,601+	0,232*	-0,152*	-0,738+	0,586+
대졸 이상	0,336+	0,168	0,168	0,300+	0,135	0,165	0,315*	0,210	0,106
거주지(기타 시도 기준)									
수도권	-0,273+	0,109	-0,382+	-0,313+	0,074	-0,387+	-0,179	0,183	-0,362*
광역시	-0,392+	0,124	-0,516+	-0,305+	0,105	-0,410**	-0,563+	0,186	-0,749+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기준)									
감각기관	0,168**	0,215*	-0,047	0,162*	0,218	-0,056	0,241*	0,204	0,037
정신장애	-0,323**	-0,399*	0,076	-0,535+	-0,736+	0,201	0,075	0,151	-0,076
신체내부	0,008	0,048	-0,040	0,109	0,109	-0,000	-0,073	-0,055	-0,018
장애정도(중증:1)	-1,007+	-0,598+	-0,410+	-0,999+	-0,624+	-0,376+	-1,046+	-0,587+	-0,459**
장애기간	0,021+	0,011+	0,010+	0,023+	0,014+	0,009+	0,019+	0,006	0,013**
장애인원인(원인불명)									
질환	0,059	0,210	-0,151	-0,001	0,191	-0,193	0,108	0,176	-0,068
사고	0,553+	0,706+	-0,154	0,518+	0,647+	-0,129	0,581+	0,750+	-0,169
산업재해, 국가유공	0,716+	0,888+	-0,172	0,602+	0,840+	-0,237	1,799+	-10,237	12,036
가구주 또는 배우자	1,816+	0,647+	1,169+	2,096+	0,766+	1,331+	1,454+	0,503*	0,951+
총 가구원 수	0,117+	-0,090**	0,207+	0,140+	-0,096*	0,238+	0,055	-0,060	0,115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수급:1)	-2,079+	-0,729	-1,350+	-2,317+	-0,850+	-1,467+	-1,600+	-0,593+	-1,008+
obs	9,340			5,659			3,681		
LR x ²	3443.4285			2292.0299			820.2037		

주: * p-value < 0.1 . ** p-value (0.05, + p-value < 0.01)

▣ 나.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분석 결과

- ▶ 15년간 취업 이행 분석에서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해 미취업자에서 취업자로 이행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취업 욕구가 있는 미취업 장애여성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은 미취업 장애 여성의 취업 상태로 이행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장애 여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장애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 7세 이하 아동이 없는 장애 여성 미취업자는 7세 이하 아동이 있는 장애 여성 미취업자에 비해 취업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7세 이하 아동으로 표현되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장애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 상태 이행에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애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 상태 이행을 위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장애 여성과 장애 남성 미취업자의 취업 상태 이행 가능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는 장애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이 장애 여성 미취업자와 장애 남성 미취업자의 취업상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여부가 장애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 상태 이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 장애 남녀 미취업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도 취업 상태 이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취업 준비 과정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남녀 장애인이 차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 정책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여 미취업자의 1년간 취업 이행 결정요인: 패널이향로짓분석(확률효과모형) 결과〉

종속변수: 취업(1)/미취업(0)	1년간 취업 이행					
	전체		남성		여성	
	Coef.	S.E.	Coef.	S.E.	Coef.	S.E.
성별:여성	-3.322***	0.107				
연령	-0.109***	-0.005	-0.121***	0.007	-0.082***	0.008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1.012***	0.099	1.011***	0.128	1.020***	0.144
정신적 장애	-0.870***	0.197	-0.509*	0.235	-1.324***	0.331
신체내부 장애	-0.979***	0.181	-0.934***	0.217	-0.942**	0.298
장애등급:경증	2.638***	0.103	2.591***	0.125	2.387***	0.165
학력:무학						
초등학교 졸업	0.046	0.137	-0.339+	0.192	0.428*	0.181
중학교 졸업	-0.622***	0.151	-0.929***	0.206	-0.328	0.209
고등학교 졸업	-0.926***	0.147	-1.380***	0.198	-0.211	0.219
대학 졸업 이상	-0.093	0.202	-0.481+	0.251	0.205	0.349
거주지: 수도권						
광역시	0.090	0.116	0.007	0.144	0.277	0.179
광역도	2.017***	0.097	2.078***	0.121	1.878***	0.150
혼인상태:미혼						
기혼(유배우)	3.043***	0.158	3.568***	0.191	1.625***	0.284
기혼(무배우)	2.390***	0.172	2.036***	0.209	1.734***	0.299
자격증 개수	0.766***	0.064	0.807***	0.078	0.648***	0.114
현재 건강상태	1.855***	0.069	2.042***	0.087	1.407***	0.107
만성질병 없음	0.958***	0.090	1.019***	0.109	0.705***	0.144
중복장애 없음	1.307***	0.206	0.819***	0.233	2.413***	0.435
7세 이하 아이 없음	1.028***	0.178	-0.230	0.229	3.291***	0.323
기초수급 받지 않음	4.546***	0.129	4.763***	0.143	3.439***	0.206

일상생활 차별 경험	-0.762***	0.052	-0.928***	0.065	-0.386***	0.082
교육훈련 받지 않음	-0.004	0.158	0.566**	0.194	-0.778***	0.257
고용서비스 받지 않음	0.024	0.106	0.658***	0.194	-1.029**	0.166
상수	-9.148***	0.490	-8.161***	0.589	-13.066***	0.882
/insig2u	3,190	0.042	3,113	0.052	3,072	0.066
sigma_u	4,928	0.103	4,743	0.124	4,646	0.154
rho	0.981	0.004	0.872	0.006	0.868	0.008
LR test of sigma_u+0:	chibor2(01)=2883.51**		chibor2(01)=1971.04**		chibor2(01)=907.07**	
Log likelihood	-18389.448		-11654.242		-6508.3092	
Wald 통계량	2846.50***		1950.05***		741.60***	

주: *** p-value < 0.001, ** p-value < 0.01, * p-value < 0.05, + p-value < 0.1

▣ 다. 실업 등 미취업 장애여성의 취업지원 수요 조사 결과

- ▶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 여성은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배려',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 '취업알선', '지역 일자리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 직업교육 훈련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훈련수당', '거주지 근처의(가까운) 직업교육 훈련시설', '장애인 전용 직업교육훈련시설', '장애인특화(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동편의'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 ▶ 직장 취업 이후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장애인을 위한 지역 표준사업장 확대', '근로시간 조정',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음.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 준비 과정 지원 수요〉



3. 정책제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장애여성 고용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여성 관련 조항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장애여성 고용촉진 조항의 신설을 통해 장애여성 고용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여성 고용촉진 조항 신설(안)〉

제8조(여성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평가
2.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과 일·생활 균형에 관한 사항
4. 여성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
5. 제6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여성장애인을 사용에 관한 사항
6.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장애여성근로자 수당 지급과 의료급여의 자급 중지 유예를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장애 여성 고용 촉진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미취업 장애여성이 취업하면 급여의 중지나 변경이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초래하고, 특히 의료급여 지급이 중지될 경우 건강권을 위협받음.
- ▶ 따라서 취업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감소분을 장애여성근로자 수당으로 보전하고, 의료급여 자급 중지 유예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여성 전용 직업훈련시설 설립 등 장애여성 친화적 직업훈련환경 조성

- ▶ 장애여성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여성 전용 직업훈련시설 설립, 시간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존 직업훈련시설의 장애여성 기숙 시설 설치,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등을 통해 장애여성 친화적 직업훈련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여성 일자리지원 특화기관 운영 및 네트워크 확대

- ▶ 장애여성 맞춤형 지역 일자리 정보와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여성 일자리지원과 고용 서비스 특화기관을 운영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여성 취업가능 직종 확대

- ▶ 독일 의료촉진의 'Discovering Hands', 음악심리치료사 등과 같이 장애여성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양한 직종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장애인 동료상담가, 장애인인권강사 등과 같이 장애여성의 경험과 암묵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고, 이들 직종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부여를 위한 자격제도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SNS 마케터, 보육교사보조원 등 장애여성의 진출이 가능한 여성유망직종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회적 일자리 등 기존 일자리와 연계한 직종 발굴이 필요함.

⌚ 선택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형태 확대

- ▶ 시간선택제, 재택근무, 창업 등 장애여성의 취업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의무 산정인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장애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해 현행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충보와 함께 장애여성 가족 단위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장애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등 단시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의무 산정인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취업전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

- ▶ 다양한 차별에 노출된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청년 장애여성과 경력 단절 장애여성의 자존감 향상, 장기홍보 훈련, 취업정보 습득, 직업체험 등 체계적인 취업전 프로그램과 '장애인 여성 자조모임'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장애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성인지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사업체 담당자의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